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468
----------	-------

발의연월일 : 2024. 2. 1.

발 의 자 : 이태규 · 정경희 · 金炳旭

조정태 · 서병수 · 추경호

김예지 · 최연숙 · 유경준

윤창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유아에게 생애 초기부터 체계적인 보육·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근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이 개정(2024. 6. 27. 시행)된 바 있으며, 현행법 또한 영유아 표준보육과정의 개발·보급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서 교육부장관으로 이관하도록 개정되어 시행될 예정(2024. 6. 27)임.

그런데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교육과정의 기본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어린이집 보육과정의 기본모델이라 할 수 있는 표준보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게 됨으로써 영유아의 보육과정과 교육과정 간에 상호 연계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음.

이에 표준보육과정을 교육부장관이 아닌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도록 함과 동시에 어린이집 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영유아를 보육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영유아에 대한 보육과정과 교육과정의 상호 연계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29조 및 제4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태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4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9840호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표준보육과정”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보육과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에 따른 보육과정,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 ④ 교육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제3항에 따른 표준보육과정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44조제4호의3 및 제4호의4 중 “제29조제4항”을 각각 “제29조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준보육과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표준보육과정은 이 법 제2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표준보육과정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9840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보육과정) ① (생 략) ② <u>교육부장관은 표준보육과정을 개발·보급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u> ③ <u>어린이집의 원장은 제2항의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영유아를 보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u><신 설></u> ④ (생 략) ⑤ <u>제1항에 따른 보육과정, 제4항에 따른 특별활동 대상 영유아의 연령 및 특별활동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u>	법률 제19840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보육과정) ① (현행과 같음) <u><삭 제></u> ③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보육과정----- -----. ④ <u>교육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제3항에 따른 표준보육과정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u>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⑥ <u>제5항</u>----- ----- -----.

으로 정한다.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교 육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 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 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 을 명할 수 있다.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 ----- ----- ----- ----- ----- -----.
1. ~ 4의2. (생략)	1. ~ 4의2. (현행과 같음)
4의3. 제29조제4항 전단을 위반 하여 영유아에게 특별활동을 제공한 경우	4의3. 제29조제5항----- ----- -----
4의4. 제29조제4항 후단을 위반 하여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게 특별활 동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 램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4의4. 제29조제5항----- ----- ----- ----- -----
4의5. ~ 8. (생략)	4의5. ~ 8. (현행과 같음)